



제 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검 토 보 고

〈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및 운영체제 마련 등 〉

■ 주진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31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입법필요성 검토	3
2.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10
3.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목적 및 정의	12
나.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및 주식	13
다. 정관, 등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8
라. 공사의 업무	22
마. 손익금의 처리, 자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상환 보증 등 공사의 재정 체계 등	24
바. 제3장 보칙	30
[참고자료]	38

I. 제안경위

1. 제안자: 주진우 의원 등 11인
2. 제안일: 2026. 3. 17.
3. 회부일: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로 인해 산업 존립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근해어선의 약 43%, 연안어선의 약 42%가 노후어선으로, 국제경쟁력 저하와 어선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업계의 경영 악화로 인해 민간 주도의 신규 어선 건조(신조)는 한계에 부딪힌 실정임.

노르웨이 등 수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어선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국민에게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 이에 수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전담할 한국수산진흥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

화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입법필요성 검토

□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노후도¹⁾의 심화는 어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종사 어선 총 38,807척 중 선령 16년 이상 어선 비중이 59.3%(23,022척), 선령 21년 이상 어선은 42.4%(16,477척)에 달하며, 이로 인해 연료비·수리비 등 어업경영비용 증가, 어선 안전사고 증가,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첨단기술의 적용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²⁾하고 있음.

< 업종별·선령별 어선척수 >

업종별	2024년 12월 기준						
	계	6년 미만	6~10년 이하	11~15년 이하	16~20년 이하	21~25년 이하	26년 이상
소계	63,731	7,727	10,344	9,167	10,573	12,097	13,823
원양어업	191	10	6	9	4	7	155
연안어업	36,514	4,246	5,378	5,150	6,254	7,818	7,668
근해어업	2,293	339	318	354	291	366	625
양식업	19,117	2,439	3,843	3,083	3,212	2,857	3,683
내수면어업	2,946	573	481	247	403	494	748
기타어업	2,670	120	318	324	409	555	944

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 업종별·선령별 어선척수 편집

1) 어선 노후에 대한 판단은 어선 선질에 따른 내구연한을 기준하며, 내구연한 기준에 따르면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어선은 15년, 강철 어선은 20년임

2) 엄선희 등, 「어선현대화 추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3), p. 2

□ 향후 5년간 노후 어선의 신조를 위해서는 약 4조에서 4.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³⁾되며, 어선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는 비교적 대규모의 장기적 투자로 어업경영이 안정적이며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수산자원의 고갈·어업인의 고령화 등의 사유로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후 어선에 대한 어업인의 장기적인 투자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어선 금융 지원은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 이차보전 사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정책금융은 단기·소규모 운전자금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어선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장기 자금 공급 기능이 미흡한 점이 있고,

< 어선 현대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추진 사업 현황 >

○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 사업 개요

○ (내용)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대체건조하는 경우, 수협에서 어선 건조 자금 90%를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이자 일부를 국비로 보전(이차보전)

○ (기간/예산) '14년 ~ 현재 / '26년 2,277백만원

* ('21) 833백만원, ('22) 1,667백만원, ('23) 1,830백만원, ('24) 1,830백만원, ('25) 2,050백만원

□ 대출 조건

○ (대출기간) 15년 분할 상환(5년 거치, 10년 분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한도 :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이차보전을) 이차보전 적용금리 - 어업인 대출금리(어업인 자부담)

* 어업인 대출금리는 고정(개인 2%, 법인 3%) 또는 변동 중 선택

3) 업선회 등, 앞의 논문, p.8

□ 추진 현황 및 계획

○ (지원실적) 연근해어선 총 56척 대체건조 지원 중

* ('16) 2 → ('17) 11 → ('18) 3 → ('19) 5 → ('20) 0 → ('21) 11 → ('22) 2 → ('23) 19 → ('24) 10

** '26년은 신청어선 15척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실행 준비 중

○ (지원계획) '30년까지 매년 15척씩 신규 지원하여 총 136척 지원 추진

* ('26) 76척 → ('27) 91척 → ('28) 106척 → ('29) 121척 → ('30) 136척

○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추진 중)

□ 지원방식

○ (지원방안) 근해어선 펀드를 조성하고 선박 대여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체 건조 비용을 펀드(60%), 금융기관 대출(30%), 선사 자부담(10%)으로 조달

* 선사는 20년 용선계약(5년 거치, 15년 상환) 체결, 용선료 형태로 상환 후 어선의 소유권 인수

○ (지원대상) 선령 21년 이상 어선 중 건조 비용이 높은 핵심 업종*우선지원

*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등 50~80여 척

○ (예산 규모) 5년 간 정부 출자금 2,302~3,040억원*(연 461~608억원 × 5년) 필요

* (선령 21년 이상 어선 척 수 × 업종별 신조 수요 × 척 당 추정 신조 비용)

□ 추진계획

○ 「근해어선 펀드」 사업안 구체화 및 관계부처·기관 협의('26.4.~'26.8.)

○ 「근해어선 펀드」 조성 및 운용('27~'31 출자, '27~'37 신조 지원, '27~'57 운영)

어업경영체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기관이 부재하며,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선 현대화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수산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전문 금융 지원 체계를 통해 어선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의 현대화와 규모화 및 어업경영체 등 수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 지원을 전담하기 위한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임.

< 주요 국가별 어선 정책금융제도 비교 >

국가	사업명	사업내용		특징 비교
		구분	내용	
일본	어업 근대화 자금	용도	어업 전반 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20톤 기준 금액 차등 대출
		조건	어선 크기별 조건 적용	
		지원	최대 20년 장기, 1%수준 금리	
	탄소중립 어업 수산업 촉진 보조사업	용도	친환경 어선 구매 또는 개조	공제를 통한 대출을 지원하며, 외국인도 가능
		조건	친환경 어선 인증 어업 종사자	
		지원	0.65%, 20년 장기, 금액최대 70%지	
	어업 공제금	용도	어선 구매, 개조, 친환경적 사업 진입 시	개인이 보증인 자격 가능
		조건	일본인 또는 외국인 어업종사자	
		지원	무이자, 조건 무담보, 최장5년	
영국	어선 현대화 보조금	용도	소규모 어선의 엔진교체	유럽국가들은 어선 현대화를 위한 어선 구매 자금 보조금이 존재
		조건	영국 등록 소규모 어선, 어구 제한	
		지원	현대화 어선의 기준 조건에 따름	
EU	노후선박 폐기지원 보조금	용도	폐선 보상금 지원	
		조건	EU국가 어업 종사자	
		지원	예산 규모에 따라 직접지원	

국가	사업명	사업내용		특징 비교
		구분	내용	
미 국	어업금융 프로그램	용도	어선 구매 또는 보수, 현대화 등	개인 자산에 따른 신용 보증을 요함
		조건	어업 종사 3년 이상, 쿼터 보유자	
		지원	기준금리+2%, 금액 최대 80%	
	상업어선 대출기금	용도	어선 구매 또는 보수, 어업장비 유지·보수	어획할당량에 대한 가치 담보 기능
		조건	어획허가를 가진 거주자	
		지원	담보물의 75%, 쿼터량의 80%, 최대15년	
아 이 슬 란 드	2020년 기후변화 행동계획	용도	탄소절감형 어선 구매 또는 개조	친환경 어선에 한정 하여 지원함
		조건	국가 내 등록된 친환경어선	
		지원	금리 1% 이차보전, 금액최대 70%	

출처 : 업선회 등, 「어선현대화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p. 82

- 제정안은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어선 신조 및 대체건조 사업과 청년어선임대사업의 금융 지원, 어업경영체의 채무보증 및 수산기자재 현대화 자금의 투·융자 지원 등 수산업 관련 금융 지원 등 금융 기능과 함께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척어선의 공공활용 지원 등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어선 현대화 및 수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전담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이 既수행 중인 기능 및 업무와의 중복 여부, 공사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 첫째, 해양수산부, 수협, 공공기관 등 유사 기관과 주요 수행업무 영역 중복 문제로 기관 간에 불필요한 경쟁과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필요성과 성격, 업무범위에 대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수산진흥공사 업무 예시에 대한 기존 사업 추진여부 및 관련 기관 >

제정안에 따른 업무 (안 제11조)	해수부 추진 사업 (위탁포함)	수협	관련 기관
어선 현대화 규모화	○	-	선박투자회사(원양) 등
어업경영체의 채무보증	-	-	농림수산식품신용보증기금 등
어선, 어구 현대화 자금 투융자	○	○	-
부수어획물 유통, 관리	시범사업 추진 예정		
어업인 복지 사업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추진 예정		
감척어선 활용, 불법어구 수거 지원	○	-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어선 청년임대	○	-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자료 : 해양수산부

- 둘째, 제정안은 자본금 5천억원에 대한 전액 정부 출자, 공사의 차입금·사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재정 부문에 대한 재정당국의 검토가 함께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공공기관 추가 설립의 타당성과 재정투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제정안은 공사에 어선신조·대체건조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감척어선 활용 지원 등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어 현재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이 수행 중인 사업의 역할 재조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공사의 주 업무 중 하나로 적시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는 연구용역('26.1~5월)을 거쳐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별도 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구체화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기획예산처는 제정안은 자본금 5천억원에 대한 전액 정부 출자, 국가의 공사 차입금·사채 원리금 상환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며, 현재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중⁴⁾인바, 기관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언론기사]

경향신문(2025.12.30.), “이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신설 속도 내야…업무보고 보니 개혁 필요성 확실””
서울신문(2026.4. 6.), “공공기관 통폐합 메스 든 정부… ‘3대 과제’ 해결에 성패 갈린다”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총 25개 조(條)의 본칙과 3개 조(條)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본칙은 총 3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 한국수산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의 자본금(5천억원) 출자 관련 사항, 공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임.
 - 제2장은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손익금의 처리, 자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사에 대한 감독,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부칙에서는 시행일(2027년 1월 1일)과 공사의 설립 준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체계 >

구 분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사무소)
	제5조(자본금)

구 분	제정안
	제6조(주식)
	제7조(정관)
	제8조(등기)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업무 및 회계	제11조(업무)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3조(자금의 차입)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상환 보증)
	제16조(채무건전성의 유지)
	제17조(비용의 보조 등)
	제18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제3장 보칙	제20조(감독)
	제2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제24조(벌칙)
	제25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제3조(설립 비용)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는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제정안의 입법목적은 제시하고,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안 제1조(목적)은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공사의 설립 목적으로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이 포함되어 어선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넘어선 넓은 의미의 수산업 발전 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공사의 업무범위(안 제11조)와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규모화’의 의미가 어선의 대형화인지 어업경영체의 대형화·집약화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명확한 의미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수산업’, ‘어업인’, ‘어업경영체’를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 11조에 따른 공사의 금융 지원 대상인 ‘어선’, ‘수산업’, ‘어업’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법률 목적은 향후 공사의 기능과 사업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정의 규정은 공사의 지원대상과 사업대상 등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의 실제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입법 목적 또는 정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및 주식(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안 제3조는 공사의 조직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며, 안 제5조는 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되, 전액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공사의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사하며 주식의 종류 등을 정관으로 정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조(법인격) 한국수산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되,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제6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안 제3조(법인격) 및 제4조(사무소)는 공사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하여, 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 출장소를 정관 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⁵⁾와 그 구조가 유사함.

현재 공사의 실제 업무 범위와 역할, 지원대상 설정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함께 검토할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2조(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3조(법인격)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사의 주된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소재지 자체가 쟁점화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력 소재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금융 또는 수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자본금)는 공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하되, 전액 정부가 출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본금 규모는 공사가 수행할 사업 내용 및 범위, 예상되는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후 어선 신조 규모는 향후 5년간 1만여 척의 어선 현대화에 2조원에서 2.5조원에서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⁶⁾, 안 제14조에서 사채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본금 5천억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토록 하는 내용은 재정적 부담과 직결될 수 있어 공사의 설립 필요성과 기능 범위에 대한 검토, 유사 정책금융기관의 사례⁷⁾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의 충분

6) 엄선희 등, 앞의 논문, p.141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

* 참고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5년 12월 기준, 법정자본금 5조원(납입자본금 3.1조원)으로, 정부(기예처, 해수부) 지분을 50.81%, 정부 외(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해운사 등) 지분을

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책금융기관의 법정자본금 규모 및 법정 출자자 >

기관명	자본금 규모	출자자(법정)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30조원 이내 (45조원 증액 예정)	정부 51% 이상 출자 (실제: 정부 100% 출자)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10조원	규정 없음 (실제: 정부,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25조원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은행, 수출업자 단체와 국제금융기구 (실제: 정부,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기타공공기관)	1조원	정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 (기타공공기관)	1조원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3조원	정부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준정부기관_기금관리형)	5조원	정부 및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준정부기관_기금관리형)	7조원	금융회사등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_준시장형)	10조원	2분의 1 이상 정부 출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준정부기관_위탁집행형)	3천억원	정부

- 안 제6조(주식)는 공사의 주식과 관련한 사항이며,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행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정부 출자 주식의 주주권 행사의 경우8), 공사에 따라 ①주무부처가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②재정경제

49.19%임

부 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지분 출자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공사 설립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 해수부 장관의 주주권의 행사는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법인격 및 사무소 소재지(안 제3조, 제4조)에 대해 법인격 및 사무소 설치의 독립된 조직체계 구성을 전제로 하는 사항인 만큼, 공사의 기능과 수행사업 범위가 구체화 된 이후에 함께 검토함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자본금 규모와 출자 방식(안 제5조, 제6조)은 공사의 업무 범위, 사업방식, 재원조달 구조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하는 사항으로, 공사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 출자를 전제로 재정투입 구조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6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 정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 정관, 등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설립등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산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안 제7조(정관)에서는 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중 실무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효율성,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관의 합법성, 적정성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인 입법사항으로 보임.

□ 안 제8조(등기)는 공사 설립을 위한 설립등기와 그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으로서, 공사가 법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법인의 존재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시하는 행위로서의 등기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사회, 임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등 이사회, 임원 등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사항 중 타 기관과 달리 규정해야 하는 사항 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입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의 경우 공사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사에 대한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대규모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수산진흥공사의 경우,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중요한 영업기밀 등을 취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지원 등에 있어서 유사명칭 사용의 악용 우려를 고려하여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안 제25조제1항은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산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유사입법례와 최근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⁹⁾ 추진에 따른 경제형벌 완화 추세¹⁰⁾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법률	과태료 또는 벌금	상한액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과태료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인증 부정 표시: 200만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인증 부정 표시: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인증 부정 표시: 500만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천만원 -인증 부정 표시: 2천만원

9) ① 법령입안기준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행위 유형*(17개)에 속하는 경우

→ 원칙적 과태료 전환

② 과태료 전환 시 원칙적으로 벌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되, 위반행위 가벌성, 벌금-과태료 간 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

③ 형사벌 필요성이 있더라도 유사입법례에 따라 과도한 수준 다소 완화하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성 강화

10) 신기술 인증 부정 표시자에 대한 형벌 규정(벌금 500만원 이하)을 과태료로 전환(과태료 200만원 이하)하는 내용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2216535)이 발의됨(2026. 2. 3.)

법률	과태료 또는 벌금	상한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벌금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500만원 -인증 부정 표시: 500만원
「수도법」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년/2천만원 -인증 부정 표시: 2년/2천만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년/3천만원 -인증 부정 표시: 500만원

라. 공사의 업무(안 제11조)

- 안 제11조(업무)는 공사가 어선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펀드 조성·운영, 공공어선 신조·매입, 용자·보증,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 자원 조성·관리 지원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선 신조 및 대체건조를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 나. 공공어선의 신조, 소유 및 임대(청년 어업인 및 비의도적 휴어 어업인 대상) 다. 노후 어선 및 유휴 어선의 매입·관리 및 재활용 2. 수산업 관련 금융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어업경영체의 민간금융 이용 시 채무보증 나. 어선 및 어구 현대화 자금의 투자 및 용자 3. 수산물 유통 및 자원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부수어획물 관리시스템 도입 및 유통 시장 개설·운영 나. 부수어획물 판매 수익금의 관리 및 어업인 복지 증진 사업 다.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적 관리 및 운영 지원 4.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감척어선의 공공활용 및 불법어구 수거 지원 나. 은퇴 어업인 대상 금융사업 및 어선 청년임대 연계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산업 진흥 관련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9. 그 밖에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해양수산부, 수협 등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역할 재조정 및 중복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산진흥공사 업무 예시에 대한 기존 사업 추진여부 및 관련 기관 >

제정안에 따른 업무 (안 제11조)	해수부 추진 사업 (위탁포함)	수협	관련 기관
어선 현대화 규모화	○	-	선박투자회사(원양) 등
어업경영체의 채무보증	-	-	농림수산식품신용보증기금 등
어선, 어구 현대화 자금 투융자	○	○	-
부수어획물 유통, 관리	시범사업 추진 예정		
어업인 복지 사업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마을어장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추진 예정		
감척어선 활용, 불법어구 수거 지원	○	-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어선 청년임대	○	-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자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근해어선펀드 등 관련 사업의 세부내용과 추진방향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를 공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은 향후 제도 설계 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제정안에 따른 업무는 현재 정부, 수협,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수행중인 정책·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공사의 업무 범위는 업무체계, 기존 기관의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마. 손익금의 처리, 자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상환 보증 등 공사의 재정체계 등(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손익금의 처리, 자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상환 보증, 재무건전성의 유지, 비용의 보조, 다른 법률의 적용 등 공사의 재정체계 및 자료제공요청권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

제 정 안

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환 보증) 국가는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6조(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사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사는 각 해당 조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제 정 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삭제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손익금의 처리)의 손익금의 처리 순서는 이월 결손금 보전 → 이익준비금 적립 → 보증이행준비금 적립 → 주주 배당 순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손익금 처리 순서¹¹⁾와 동일한 사항으로 규정됨.

보증이행준비금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해운항만업 관련 차입 자금에 대한 대규모 채무보증 등을 제공하는 공사의 업무 성격¹²⁾에 따라 보증이행준비금에 대한 적립을 규정한 것으로

11)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 순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5조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5조에 따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당

1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이해되나,

제정안에 따른 한국수산진흥공사의 경우 어업경영체의 민간금융 이용 시 채무보증 외에 특별한 보증 제공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보증이행준비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립금은 결손 보전에 충당하거나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에 따른 적립금 및 제2호에 따른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의3.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3.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그 수탁

5.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이하 생략)

- 안 제13조(자금의 차입)는 공사가 대규모 금융투자 및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써 추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결을 통해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유사입법례 》

<자산관리공사법>

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한국공항공사법>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안 제14조(사채의 발행)는 공사의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채 발행 한도는 유사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합 4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의 책임성과 재무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해 보임.

《 유사입법례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제 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항만공사법>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에 따른 공사의 손익금 처리, 차입 및 사채 발행 등 공사의 재정체계 규정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공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재정 투입 및 정부지원 구조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기획예산처는 공사의 재원조달 방식과 정부의 지원 범위는 향후

공사의 기능, 사업범위가 보다 명확해진 이후 재정여건과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금과 사채의 원리금 상황을 국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안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공사의 자료제공 요청권은 공사의 실제 업무와 기능이 명확하게 정리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하나, 현재 공사의 역할과 수행사업 범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제11조에 따른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료요청 대상과 범위까지 폭넓게 설정할 경우, 공사의 권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의 자료요청 요청권은 향후 공사의 기능과 업무범위가 명확히 확정된 이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바. 제3장 보칙(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공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및 명령 규정, 감독에 필요할 경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규정, 대리인의 선임,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벌칙 규정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장 보칙

제20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산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안 제20조(감독) 및 제2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는 공사에 대하여 해수부장관이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건전성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검사권을 부여하며, 지도·감독 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고서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금융 업무에 대한 전문적 검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위탁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주무부처의 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의 범위에서 공사에 대해 감독과 명령 권한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원회도 경영건전성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시정요구는 감독의 통일성, 효율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요구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유사입법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보증법」에서도 주무부처의 장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보고·검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재수탁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 또는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0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예산 및 결산

2.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기금의 결산
6.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7. 제6호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 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직원이 재임 중이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감독·검사 체계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공사의 실제 업무와 기능이 명확하게 정리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하나, 현재 공사의 역할과 수행사업 범위에 대해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제정안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까지 관여하는 검사·감독 구조를 두고 있는바, 동 사항은 공사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안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임직원의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건전한 공사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직무상 비밀은 임직원 개인이나 특정인의 이익 관련성이 높고, 비밀 누설로 초래되는 시장의 혼란 가능성이 클 수 있으며, 수산업 관련 대규모 금융지원을 다루는 등 공사의 경우 비밀누설로 인한 공사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수의 법률¹³⁾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공사의 설립과 조직 운영을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자·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공사의 기능과 수행사업 범위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이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임.

□ 안 제24조의 벌칙은 안 제23조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신의성실에 입각한 건전한 공사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벌칙의 수준은 타 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임.¹⁴⁾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의무)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항만공사법」 제43조(벌칙)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 제25조의 과태료는 안 제10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보이며, 과태료의 수준은 입법례에 따라 다양하나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¹⁵⁾

- 해양수산부는 안 제24조 및 제25조의 벌칙 규정에 대해 공사의 설립과 조직 운영을 전제로 하는 사항으로, 이해관계자·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공사의 기능과 수행사업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이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⁶⁾.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4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주택도시기금법」 제36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52조(과태료) ①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제59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한국가스공사법」 제20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의 처
02)6788-5419

16)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 사업 개요

- (목적) 노후어선 대체건조자금 지원을 통한 어선의 탄소배출 저감, 안전사고 예방 및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 (내용)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대체건조하는 경우, 수협에서 어선 건조자금 90%를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이자 일부를 국비로 보전(이차보전)
- (기간/예산) '14년 ~ 현재 / '26년 2,277백만원
* ('21) 833백만원, ('22) 1,667백만원, ('23) 1,830백만원, ('24) 1,830백만원, ('25) 2,050백만원

□ 대출 조건

- (대출기간) 15년 분할 상환(5년 거치, 10년 분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한도 :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이차보전율) 이차보전 적용금리 - 어업인 대출금리(어업인 자부담)
* 어업인 대출금리는 고정(개인 2%, 법인 3%) 또는 변동 중 선택

□ 추진 현황 및 계획

- (지원실적) 연근해어선 총 56척 대체건조 지원 중
* (~'16) 2 → ('17) 11 → ('18) 3 → ('19) 5 → ('20) - → ('21) 11 → ('22) 2 → ('23) 19 → ('24) 10
** '26년은 신청어선 15척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실행 준비 중
- (제도개선) ❶금리인하, ❷사업대상 업종 확대, ❸대출 상환기간 연장, ❹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상향
① ('14) 3% → ('15~) 2%
② ('14~'20) 대형선망·권현망·쌍끌이저인망 등 3개 업종 → ('21~) 근해 21개 전 업종 + 차세대 표준어선 10개 업종
③ ('14~'16)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 ('17~)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
④ ('22~)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 개인(10억 → 30억), 법인(50억 → 70억)
- (지원계획) '30년까지 매년 15척씩 신규 지원하여 총 136척 지원 추진
* ('26) 76척 → ('27) 91척 → ('28) 106척 → ('29) 121척 → ('30) 136척

□ 추진배경

- (현황) 근해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핵심*이나 어선 노후화**로 인해 사고 위험 노출 심화 및 조업효율 급감 중이며 업계 자력 대체 건조 한계***

* ('24년) 근해어선 2,293척(전체 척 수 대비 5.7%) / 생산량 47.2만톤(전체 대비 56.2%)

** 근해어선 중 선령 21년 이상 991척(43%), 26년 이상 625척(27%)으로 대체 필요

*** 일부 근해어선은 높은 건조 비용으로 기존 대체 건조 사업(이차보전)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

- (물가) 근해어업은 대중성 어종의 주요 공급원*이므로 신조 지원을 통한 조업 효율 제고 및 안전성 강화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뒷받침 필요

* 근해어선 생산 비중('25년): 고등어(85.3%), 조기(96%), 오징어(85.9%), 갈치(80.9%) 멸치(73.8%)

- (환경규제)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해외 중고선을 구입하여 노후 어선을 대체하던 기존의 선박 교체 방식 유지가 불가하여 선박 신조 필요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준수 선박만 도입 가능

□ 지원방식

- (지원방안) 근해어선 펀드를 조성하고 선박 대여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체 건조 비용을 펀드(60%), 금융기관 대출(30%), 선사 자부담(10%)으로 조달

* 선사는 20년 용선계약(5년 거치, 15년 상환) 체결 용선료 형태로 상환 후 어선의 소유권 인수

- (지원대상) 선령 21년 이상 어선 중 건조 비용이 높은 핵심 업종*우선 지원

*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등 50~80여 척

- (예산 규모) 5년 간 정부 출자금 **2,302~3,040억원***(연 461~608억원×5년) 필요

* (선령 21년 이상 어선 척 수 × 업종별 신조 수요 × 척 당 추정 신조 비용)

□ 추진계획

- 「근해어선 펀드」 사업안 구체화 및 관계부처·기관 협의('26.4.~'26.8.)
- 「근해어선 펀드」 조성 및 운용('27~'31 출자, '27~'37 신조 지원, '27~'57 운영)